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필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 따라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6조, 제27조)
 - 상위 법령에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조례에 중복 조항 정비
 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정의 등을 반영
-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필수 위임조례 규정 신설(안 제28조, 제67조)
 - 초지 대부료 요율 신설
 -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, 「초지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, 초지 대부료 요율 규정과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